

#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75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4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폐지이유

- 안산시 기계류관리조례는 1986. 1월 1일자로 제정되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
-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농업기계의 보유능력과 가용 능력이 우수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항으로 인정되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치법규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동 조례 폐지

## □ 폐지 조례안 : 별첨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

##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

안산시조례 제70호  
( 1986. 1. 1 )

개정 1986. 8.14 조례 제118호

제1조(목적)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  
유기계류(이하 "기계류"라 한다)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  
에 따른다.

제2조(종류) 이 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동력경운기
2. 양수기(발동기포함)
3. 동력살분기 및 분무기
4. 토운차
5. 천공기
6. 농용트랙터
7. 전동펌프
8. 고성능 분무기
9. 콤바인
10. 이앙기
11. 바인더
12.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

제3조(위임관리) ①시장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
할 때에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장에게 위임  
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류의 관리를 위임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  
식에 의한 보관전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 
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.

④농용트랙터 작업중 관리담당자 또는 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

비치하고 사용 현황을 기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사용구역) 이 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구역은 시관내 지역으로 한다.

제5조(용도) 농용트랙터는 재해대책사업, 새마을사업, 농업증산사업에 우선 대여한다.

제6조(사용허가) ①이 조례에 정하는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 신청서는 그 소관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료)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표 구분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별표 구분에 계기되지 아니한 기계류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.<개정 '86. 8.14>

②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있어 양수기 발동기중 1대만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후 사용계약기간 1일 초과시 1일 사용료의 5%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추가 징수한다.
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등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
2. 공공사업 또는 재해대책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
3. 기타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
2.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사업으로서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
3. 기타 특별히 감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

제 10조(기계반환) ①기계류를 사용한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②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그 고장 유무를 관계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1조(경비부담) 기계류 사용기간중에 소유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 트랙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2조(기술자고용) ①사용하는 기계류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.

②트랙터의 경우에는 운전원과 조수의 보수는 시장이 지급한다.

제 13조(변상책임) 사용자 또는 트랙터 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계 또는 트랙터 부속품류를 분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 14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은 따라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'86. 8.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● 農業機械化促進法

소관부처 : 농림부

全文改正	1994 · 11 · 11	法律第4788號
改正	1996 · 8 · 8	法律第5153號(政府組織法)
	1997 · 12 · 13	法律第5453號(行政節次法の施行에 따른 公認會計士法 등의 整備에 관한 法律)
	1997 · 12 · 13	法律第5454號(政府部處名稱 등의 변경에 따른 建築法 등의 整備에 관한 法律)

第 1 條 (目的) 이 法은 農業機械의 開發과 普及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農業의 生産性向上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 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
1. “農業機械”라 함은 農林畜産物의 生産 및 生産후 處理作業과 生産施設의 環境制御 및 自動化등에 사용되는 機械·設備 및 그 附屬 機資材를 말한다.
2. “農業機械化事業”이라 함은 農業機械의 研究·調査·開發·生産·普及·이용·技術訓練·사후관리·安全管理등을 통하여 農業生産技術의 향상과 農業의 構造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.

第 3 條 (農業機械化促進義務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化事業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.

第 4 條 (資金支援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를 購入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附帶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필요한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의 製造業者에게 農業機械의 開發·生産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第 5 條 (農業機械化基本計劃) ①農林部長官은 農業機械化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農業機械化基本計劃(이하 “基本計劃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改正 96·8·8>

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農業機械의 需給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
2. 農業機械의 研究·開發 및 檢査에 관한 사항
3. 農業機械에 대한 技術訓練에 관한 사항